

구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11. 라. (3) 전환시 유의사항	<p><기존> “제2부.11.다.(2) 전환절차 및 방법” 에도 불구하고 JP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및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“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” 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영업일로 합니다. 다만,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</p>	<p><변경> “제2부.11.라.(2) 전환절차 및 방법” 에도 불구하고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“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” 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영업일로 합니다. 다만,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</p>
제 2 부.14. 나. (4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<p><기존>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은 원천징수되며(2007. 6.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15.4%, 법인에 대해서는 14.0%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0%),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. 투자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(배당, 이자 소득 포함)이 연간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수입에 포함되며,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.5%(2012년 이후 최고세율 36.3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(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됨).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.2% (2012년 이후 최고세율 22.0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,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.</p>	<p><변경>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은 원천징수되며(2010. 12.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15.4%, 법인에 대해서는 14.0%),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. 투자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(배당, 이자 소득 포함)이 연간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4,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며,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.5%(2012년 이후 최고세율 36.3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(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됨).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.2% (2012년 이후 최고세율 22.0%로 인하)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,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.</p>

구	정 정 전	정 정 후
<p>[붙임] 용어풀이. 17.</p>	<p><u>바. JP 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/u> <기존> <u>차. JP 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</u></p>	<p><삭제> <변경> <u>자. JP 모간 인디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 <호번호변경></p>